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농어업인에 대한 유류비 등 지원 근거 마련〉  
■ 박형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992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형수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1. 13.
3. 회 부 일 : 2026. 1. 14.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업인의 국민건강보험료, 건강검진비, 질병의 치료·재활비, 국민연금보험료, 영유아 보육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기침체와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3중고가 겹치면서 농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의 여파로 국제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이에 따른 국내 유류비와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으로 농어업인의 에너지 지출 부담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황임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근거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가격 인상으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제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류비 또는 전기·가스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제17조의3(농어업인에 대한 유류비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에게 유류비나 전기·가스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br>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기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부칙                                                                                                                                                                |
|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러시아의 대유럽 천연가스 배송관 가동 중단 등으로 국제 에너지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음.<sup>1)</sup>

#### [ 국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추이 ]

| 구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
| 국제유가(두바이)<br>(\$/배럴)  | 52.3  | 69.4  | 96.4   | 82.1  | 79.5  | 69.1  |
| 유연탄(전력용연료탄)<br>(\$/톤) | 61.0  | 141.8 | 360.1  | 172.8 | 135.1 | 105.4 |
| 천연가스 수입가격<br>(\$/톤)   | 390.1 | 550.8 | 1053.5 | 781.9 | 628.2 | 554.8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 국회입법조사처, 두 개의 전쟁으로 진단한 에너지 공급망 구조의 안전성, 2023.10.23.

이후 국제 에너지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농어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유류비는 2021년 및 2022년과 비교 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농어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전기요금의 경우에도 한국전력이 발전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적자 타개를 위해 2022년 2분기부터 3년간 총 7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함에 따라 2025년 농사용 전기 판매단가는 2021년 대비 92.6% 상승한 상황임.

#### [ 농자재 등 비용 증가 추이]

| 구분                     |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
| 면세유<br>(원/ℓ)           | 경유  | 688  | 829  | 1,396 | 1,209 | 1,144 | 1,115 |
|                        | 등유  | 675  | 783  | 1,296 | 1,196 | 1,152 | 1,115 |
|                        | 휘발유 | 650  | 796  | 1,248 | 1,073 | 1,065 | 1,034 |
| 농사용 전기 판매단가<br>(원/kwh) |     | 48.4 | 45.9 | 56.9  | 75.1  | 82.1  | 88.4  |

※면세유: 한국석유공사 공시가격, 농사용 전기 판매단가: 각 연도별 전력판매액/사용량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개정안은 이와 같은 유류비 등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류비 또는 전기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농업·임업·어업용 등 석유류에 대해서는 이미 부가세 등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농어업인에게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는 점,<sup>2)</sup>

2)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2024년 3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sup>3)</sup>

2025년 12월에는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2026.12. 시행예정)하여 농업용에너지를 포함한 필수농자재등<sup>4)</sup>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격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법 체계 내에서도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입법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 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생략)
-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4)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업용에너지"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중 다음 각 목의 에너지를 말한다.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
  - 나.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가한 전기의 공급약관에 따른 농사용 전기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가 필수농자재 및 농업용에너지(이하 "필수농자재등"이라 한다)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
|--------------|
| 문 의 처        |
| 02)6788-5414 |